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 도입 및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0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6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이 경우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하 여
 ㅁ-----.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 여 야-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보조기기 또는 제공되는 편의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0.1%로 다수 기관에서 관련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 중인 편의 · 보조기기 중 수어통역(12.4%) · 음성지원시스템(6.5%) · 인쇄물음성출력기기(5.7%) 등 의사소통 지원수단의 제공 비율은 낮게 보고되었음.¹⁾

□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경험자 기준,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티켓 발권기(32.3%)뿐 아니라, 무인 증명서 발급기(23.6%), 무인접수기(23.6%) 등에서도 상당한 불편이 나타났으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불편했던 장소(업종)로는 공공시설(53.8%), 아파트(83.3%), 음식점(70.1%), 대형서점(70.0%), 패스트푸드점(69.0%)이 제시되는 등 이용 공간 전반에서의 접근성 제약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²⁾

1)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24일).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³⁾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환류할 수 있는 평가·공표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권리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정요구 이후 이행 절차(조치계획 수립·제출, 이행결과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가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행 결과 보고 등 후속 절차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의무

3)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및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까지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
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
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
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 개발
·보급 및 필요한 지원과 한국수어·구화·점자·접근성바코드 자
료·큰 문자 등의 습득 및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강구 의무’에서 ‘하여야 한다’ 수준의 이행 의무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행 의무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의 종류·수준(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대상·우선순위(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는지), 제공 절차(신청·제공·사후관리의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이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것인지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의 방식(공청회·자문기구 운영·서면의견 제출 등), 절차,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적인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이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공표 및 시정요구 등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시행 전까지 평가 기준·절차 마련, 관계기관 안내 등 제도 운영 기반을 정비할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일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해소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의 종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 신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등을 할 경우 장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 결정 등의 경우에 장애인 당사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로, 개정안과 같이 의견수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고 중복의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개정안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정부의 실행 역량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9